

# - 김 해 상 공 회 의 소 -

## 제46호 주간기업정보

### 목 차

#### 1. 기업지원 안내

- 1-1. 2020년 분야별 시책•제도 안내.....p1
- 1-2. 2020년 김해시 중소기업 세제지원 안내.....p2
- 1-3. 2020년 수출지원시책 통합 설명회 개최 안내.....p3
- 1-4.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.....p3
- 1-5. LNG 특화 친환경선박 기자재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안내.....p4
- 1-6.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‘가야클리닝’ 운영안내.....p4

#### 2. 공지사항

- 2-1. 2020년 [재]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안내.....p4
- 2-2. 김해자동차부품 기업협의회 회원가입 안내.....p4
- 2-3.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이용 안내.....p4





# 김해상공회의소 주간기업정보

제46호  
(2020년 1월 14일)

담당자 이 변 중 창 현

전화번호 337-6001

팩스번호 337-6006

이 자료는 김해상공회의소가 유관기관에서 안내·공고한 최신 법개정내용, 자금, 인력, 등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문 특화하여 요약 제공하며 상세내용은 해당기관 또는 김해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김해상공회의소 홈페이지 [gimhaeccci.korcham.net](http://gimhaeccci.korcham.net) 주간기업정보란에 게재)

## 1. 기업지원 안내

### 1-1. 2020년 분야별 시책·제도 안내

#### □ 일자리·경제 부문

##### ○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시 장려금 지원

- 추진배경 :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주요내용
  - ①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
    - ※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
  - ②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- 시 행 일 : 2020. 1. 1(수)
- 관련부서 :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(☎ 044-202-7465)

#### □ 환경·안전 부문

##### ○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

- 추진배경 :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
- 주요내용
  - ① 11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 현행 대비 평균 30% 강화
  - ② 13종의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현행 대비 평균 33% 강화
  - ③ 측정대기유해물질[벤조(a)피렌 등 8종] 배출허용기준 신설
  - ④ 흡수식 냉난방기기, 동물화장시설 대기배출시설로 신규지정
- 시 행 일 : 2020. 1. 1(수)
- 관련부서 : 김해시 기후대기과(☎ 055-330-3361)

##### ○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 도입

- 추진배경 :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 추가
- 기 준
  -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부과금 부과(8종) : 황산화물, 암모니아, 황화수소, 이황화탄소, 먼지, 불소화물, 염소, 시안화수소
  - ②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기본부과금 부과(2종) : 황산화물, 먼지
- 달라지는 내용 :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(초과 9종, 기본 3종)
  - ※ '20년 사업장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 70%이상일 경우 1kg당 1,490원 부과
  - ※ '21년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50%이상일 경우 1kg당 1,810원 부과
- 시 행 일 : 2020. 1. 1(수)
- 관련부서 : 김해시 기후대기과(☎ 055-330-3361)

##### ○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시행

- 추진배경
  -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(2020. 4. 3)
  - ②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 시행
- 주요내용

| 제도·정책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시기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지역배출허용총량제            | -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0. 4. 3 |
| 사업장 총량관리제            | - 1~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동안 황산화물 4톤/년 질소산화물 4톤/년 먼지 0.2톤/년 초과 사업장에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0. 4. 3 |
|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  | - 대 상 : 특정경유자동차(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)<br>- 내 용<br>• 기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적용<br>• 검사결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저공해조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0. 4. 3 |
| 공공발주공사에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| - 적용규모 : 행정·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(토목 및 건축사업)<br>- 제한대상<br>• '05. 12.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, 콘크리트 펌프, 콘크리트 믹서<br>• '03. 12. 31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| '20. 4. 3 |

- 시 행 일 : 2020. 4. 3(금)
- 관련부서 : 김해시 기후대기과(☎ 055-330-3361, 3351)

## ○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대상 확대

- 근거법령
    - ① 대리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(2020. 4. 3)
    -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(2020. 4. 3)
  - 기 준
    -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
      - ▶ 대상지역 : 동지역(장유 제외)
      - ▶ 신고의무 :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, 주유소, 세탁시설,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, 기타 제조업, 폐기물 보관·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
  - 달라지는 내용
    -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확대
      - ▶ 대상지역 : 김해시 전 지역
      - ▶ 신고시기
- |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| 신고내용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신규 설치하려는 자             |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| 설치 전         |
|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| 배출시설 설치 신고        | '20. 7. 2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지시설 설치 신고        | '22. 4. 3 이내 |
- ②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비 지원
    - ▶ 지원대상 : '18년 휘발유 판매량 2,000m<sup>3</sup>미만 영세 자영주유소로서 의무 설치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
    - ▶ 지원비율 : 규모별, 조기설치 시기별 차등 지원(3년 조기설치 및 면제사업장 50%, 2년 조기설치 40%)
  - 시 행 일 : 2020. 4. 3(금)
  - 관련부서 : 김해시 기후대기과(☎ 055-330-3361)

## □ 토지·건축

### ○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변경 및 해제신고 의무화

- 추진배경
  - ① 『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』 제3조 및 제3조의2 개정
  - ②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
- 주요내용

|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[부동산거래 신고]<br>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| [부동산거래 신고]<br>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 |
| [부동산거래 해제신고]<br>해제신고 비의무     | [부동산거래 해제신고]<br>해제신고 의무(30일 이내) |

- 시 행 일 : 2020. 2. 21(금)
- 관련부서 : 김해시 토지정보과(☎ 055-330-3761)

### ○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확대

- 추진배경 :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면적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특례기간 만료로 종료됨(특례기간 : '17. 1. 1 ~ '19. 12. 31)
- 주요내용

|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도시지역 1,500m <sup>2</sup> 이상<br>- 비도시지역 2,500m <sup>2</sup> 이상 | - 도시지역 990m <sup>2</sup> 이상<br>- 비도시지역 1,650m <sup>2</sup> 이상 |

- 시 행 일 : 2020. 1. 1(수)
- 관련부서 : 김해시 토지정보과(☎ 055-330-3753~5)

### ○ 건축물 정기점검 및 해체허가

- 추진배경 : 건축물 사용가치를 향상 및 화재·붕괴 등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「건축물관리법」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
- 주요내용

|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[건축물 정기점검]<br>-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, 2년 주기<br>- 소유자·관리자가 점검자 지정       | [건축물 정기점검]<br>- 준공 후 5년 이후 최초, 3년 주기<br>-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[건축물 해체허가]<br>- 철거공사 시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철거·멸실 신고<br>- 철거·멸실 후 완료신고 없음 | [건축물 해체허가]<br>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* 해체 시 해체공사 허가를 득하고 감리 지정(그 외는 해체 신고)<br>-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<br>*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, 높이 20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|

- 시 행 일 : 2020. 5. 1(금)
- 관련부서 : 김해시 건축과(☎ 055-330-4641)

○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

- 추진배경 : 「건축물관리법」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
- 주요내용
  - ① 기존 건축물 중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의 3층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야함(2020년 5월 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포함)
  - ②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- 시 행 일 : 2020. 5. 1(금)
- 관련부서 : 김해시 건축과(☎ 055-330-3653)

□ 공 고 : 김해상공회의소 공지사항

1-2. 2020년 김해시 중소기업 세제지원 안내

□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

- 지원형태 : 지방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)
- 지원내용 : 취득세(60%), 재산세(50%)
- 지원대상
  - 감면부동산 :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  - 세부내용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
    - ※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
    - ※ 부속토지 :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

□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
- 지원형태 : 지방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, 제78조)
- 지원내용 : 취득세(50%), 재산세(5년간 75%)
- 지원대상
  - 감면부동산 :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  - 세부내용 : 대상 지역
    - ※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    - 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치지역
    - ※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
  - 산업용 건축물 대수선 : 취득세(25%)

□ 공 고 : 김해시 공지사항

□ 문 의 처 : 김해시 세무과 세원관리팀(☎ 055-330-4985)

1-3. 2020년 수출지원시책 통합 설명회 개최 안내

- 일 시 : 2020. 1. 20(월)
- 장 소 : 김해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  
[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]
- 내 용 : 2020년 수출지원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
- 대 상 :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 희망자
- 참 여 :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, 부산세관, 경남도, 중소기업진흥공단, 코트라, 무역협회 등 10개 기관
- 문 의 처 :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팀  
(☎ 055-268-2541, 2545)

1-4.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

- 지원대상 : 청년(만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내용 : 청년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
  - ※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청년 30~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청년 100인 이상 3번째 채용청년부터 지원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
- 공 고 : 고용노동부 공지사항
- 문 의 처 : 김해고용센터(☎ 055-330-6437)

### 1-5. LNG 특화 친환경선박 기자재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안내

- 사업내용 : 2020년 광역협력권 산업육성사업 관련 친환경선박 기자재 전·후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지원사업 지원
- 사업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 (12개월)
- 지원대상 : 경남, 울산 소재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내용 : 기술지원(시제품제작(건당33,000천원 내외), 기술지도(건당2,000천원 내외), 장비활용지원(건당5,000천원 내외) 등 사업화지원(시장정보분석/특허컨설팅(10,000천원 상당))
- 접수기한 : 2020. 2. 9(일) 까지
- 공 고 : 경남테크노파크 사업공고
- 문 의 처 : 지원별 문의처 상이

### 1-6.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'가야클리닝' 운영안내

- 대 상 : 김해시 산업단지 4개소 내 중소기업장 (골든루트일반산업, 테크노밸리일반산업, 덕암일반산업, 내삼농공단지)
- 장 소 : 골든루트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1층 (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12-2)
-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- 지원내용 : 산업 내 중소기업장 근로자 작업복 수거·세탁
- 요 금

| 구 분             | 가 격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하복 및 춘추복 상·하의 | 500원   | 세탁 최소비용 500원임으로 상의, 하의 단일상품을 맡겨도 동일하게 1벌로 책정 |
| ② 동복 및 얇은 청     | 1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고급소재 및 두꺼운 청  | 1,5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공 고 : 김해상공회의소 공지사항
- 문 의 처 : 김해지역 자활센터 세탁사업단 (☎ 055-329-6373)

## 2. 공지사항

### 2-1. 2020년 (재)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안내

- 내 용 : 김해상공회의소와 (재)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과 공동협력하여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 추천인원 : 기업당 1~2명 이내
- 추천기한 : 2020. 1. 17(금) 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
※ 우편접수는 기한내 도착분까지 유효
- 공 고 : 김해상공회의소 공지사항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경영사업부(☎ 055-337-6001)

### 2-2. 김해자동차부품 기업협의회 회원가입 안내

- 내 용 : 김해상공회의소와 김해시가 상호협력하여 김해 대표업종인 자동차, 조선, 금형(기계·금속), 항공기 등 4개 업종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와 동종산업 기업으로 현황해결을 위한 업종별 기업체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구성 예정이며, 우선적으로 자동차 업종 기업체 협의회 창립
- 대상기업 : 김해지역 자동차부품 업종기업
- 가입절차 : 김해상공회의소 연락 후 협의회 가입신청서 작성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통상사업부(☎ 055-337-6001)

### 2-3.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이용 안내

- 사업내용 :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제공, 입찰실무교육
- 대상기업 : 김해지역 소재기업(법인, 개인)
- 지원내용 : 조달청, 정부투자기관, 민·관 발주기관 등의 시설(공사)·용역·물품(구매)·매각 입찰 정보 제공
- 이용절차 : 김해상공회의소 입찰정보 홈페이지(<http://gimhaecci.bidpage.co.kr>) 무료 회원가입 후 이용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경영사업부(☎ 055-337-6001)